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명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61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23.

발의자 : 김명연 · 곽대훈 · 김무성  
김상훈 · 김순례 · 박덕흠  
박명재 · 송석준 · 송희경  
이양수 · 이종명 · 임이자  
정유섭 · 홍철호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의 신생아가 전원(轉院)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있었음.

이는 현행법상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,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.

이에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, 천재지변,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

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 신설).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입원환자의 전원) ① 의료기관의 장,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(轉院)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환자(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

2.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, 감염병 의심 상황,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47조의2(입원환자의 전원) ①</u></p> <p><u>의료기관의 장, 의사·치과의사</u>  <u>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</u> 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</u>  <u>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</u>  <u>전원(轉院)시킬 수 있다. 다만,</u>  <u>제2호의 경우에는 환자(환자가</u>  <u>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</u>  <u>자의 보호자를 말한다. 이하 이</u>  <u>조에서 같다)의 동의를 받아야</u>  <u>한다.</u></p> <p><u>1.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</u></p> <p><u>2.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서</u>  <u>진료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</u>  <u>판단하는 경우</u></p> <p>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</u>  <u>변, 감염병 의심 상황, 집단 사</u>  <u>망사고의 발생 등 보건복지부</u>  <u>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</u>  <u>우에는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</u>  <u>없이 전원시킬 수 있다.</u></p>